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국토교통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의 과태료 전환 〉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805호)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140호)

2024. 12.

국 토 교 통 위 원 회
전 문 위 원 곽 현 준

목 차

I . 정동만의원 대표발의(2204805)	1
1. 제안경위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 . 엄태영의원 대표발의(2205140)	2
1. 제안경위	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
III . 검토의견	3
1.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과태료 전환(안 제65조 제1항제4호의2 삭제 및 제67조제1항 신설)	3
가. 개정안의 내용	3
나. 검토의견	5
1) 입법배경	5
2)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대한 검토	8
3) 경과조치 미규정에 대한 검토	10
4) 체계자구 및 시행일에 대한 검토	12
다. 국토교통부 의견	12

I. 정동만의원 대표발의(2204805)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정동만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21.
3. 회 부 일 : 2023. 10. 22.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 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II. 임태영의원 대표발의(2205140)

1.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임태영의원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0. 31.
3. 회 부 일 : 2023. 11. 1.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00년 이후 자유업으로 유지되던 물류창고업을 2012년 등록제로 전환하여 바닥 및 토지 면적 등을 기준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경우 관계 부처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면서, 미등록 사업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기준이 난해하여 이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게 되었으나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으로 인해 위험을 감수하고 있는 중소기업체들이 존재함에 따라, 제재조치 수준을 완화하여 미등록 업체들의 자진 등록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중소기업체의 사업 안정성을 확보하고 영세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물류창고업 등록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를 벌칙에서 과태료 부과로 전환하려는 것임(안 제65조제1항 및 제67조제1항).

Ⅲ. 검토의견

1.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의 과태료 전환 (안 제65조제1항제4호의2 삭제 및 제67조제1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¹⁾에 따르면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여야 함.

현재는 물류창고업 등록의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채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나, 정동만의원안은 이러한 벌칙을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이고, 엄태영의원안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려는 것임.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소유 또는 임차하여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또는 해양수산부장관(「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1.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해당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바닥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결한 경우에는 연결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2.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보관시설이 차지하는 토지면적을 포함하고 하나의 필지를 기준으로 물류창고업을 등록하고자 하는 자가 직접 사용하는 면적만을 산정하되, 필지가 서로 연결한 경우에는 연결한 필지를 합산하여 산정한다)

현행	정동만의원안	엄태영의원안
제65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제7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처분행위로 얻은 이익이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65조(벌칙) ① ----- ----- ----- ----- ----- ----- ----- ----- ----- -----.	제65조(벌칙) ① ----- ----- ----- ----- -----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1. ~ 4. (현행과 같음)
4의2.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삭제>	<삭제>
4의3. ~ 7. (생략)	4의3. ~ 7. (현행과 같음)	4의3. ~ 7.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67조(과태료) < 신설>	제67조(과태료) ①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67조(과태료) ① 제21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게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현행	정동만의원안	임태영의원안
① ~ ③ (생략)	부과한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과한다. 다만,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는 제외한다. ② ~ ④ (현행 제1항부터 제3항까지와 같음) 부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검토의견

1) 입법배경

창고업은 1970년 「창고업법」 제정 시 허가제로 출발하여 1992년 등록제로 변경된 후 지난 2000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동 법의 전신인 「화물유통촉진법」²⁾ 이 개정되어 등록제가 폐지³⁾되고 자유업으로 전환되었음.

자유업으로 전환된 이후 영세 물류업자의 난립⁴⁾으로 물류창고 시설

2) 동 법은 2007년 8월 3일 「물류정책기본법」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분리 개정되었음.

3)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IMF 이후 1997년 「기업규제완화법」에서 물류창고업 등록면제 특례조항(창고업 등록 없이 창고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특례 부여)이 신설됨에 따라 등록제가 이미 실질적으로 폐지되었다는 설명임.

4) 지난 2010년 통계청 경제통계국 산업통계과에 따르면 종업원 수가 20인 미만인 소규모 업체가 주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는 업체의 수 또한 전체 업체의 30%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음.

즉, 물류창고업은 진입 자유화로 인해 영세업체가 난립하는 구조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채 전문 물류창고업자의 부족으로 인한 화물 파손율의 증가, 새로운 아이템 개발의 부진 등에 대

의 현황과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대형화재와 같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는 등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등 그 운영방식이 한계에 이르렀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물류창고업에 대한 화주의 신뢰를 회복하고 양질의 물류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보다 선진화된 물류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난 2011년 일정 규모⁵⁾ 이상의 물류창고업을 현행 자유업에서 등록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809158호)」이 의결되어 물류창고업 등록제가 도입되었음.

【 물류창고업 운영방식의 변천과정 】

년도별	1970년	1992년	2000년	2008년	2011년
근거법	창고업법 ⁶⁾	화물유통 촉진법	화물유통 촉진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운영방식	허가제	등록제	자유업	자유업	등록제 (일정 규모 이상)

이에 따라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5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록의무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않은 채 물류창고업을 경영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의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음.

한 지적이 있었음.

5) 보관시설 : 바닥면적 1,000m² / 보관장소(야적장 등) : 바닥면적 4,500m²

6) 동 법은 1991년 12월 14일 폐지되었음.

그러나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당시 등록대상⁷⁾에 대한 이해 부족 등으로 최초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거나, 관련 법령에 대한 이해 부족⁸⁾으로 미등록 상태에 있어, 형벌에 해당하는 벌칙에 처할 위험으로 인해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중소기업체들이 존재함.

이에 불합리한 경제형벌로 인한 국민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운영되는 경제 형벌규정 개선 TF(기획재정부 1차관, 법무부 차관 공동 단장)에서 마련한 범부처 ‘경제 형벌규정 3차 개선과제(2023.10.12.)’에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법령개선 추진과제가 포함되었음.

참고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으로 적발되

7) 물류창고업 등록대상은 ①유상으로 ‘타인’의 물건을 보관하고, ②바닥면적 또는 전체면적 조건을 충족하는 업체로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임차·재임차 관계 등으로 인해 국민이 해석함에 있어 복잡한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임.

8) 그 전부를 그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에 따른 유독물 보관·저장업,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위생 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냉동·냉장업 등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을 받은 때에는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새로 등록이 필요 없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물류창고업의 등록) ④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를 갖추고 그 전부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로만 사용하며 해당 법률에 따라 해당 영업의 허가·변경허가를 받거나 등록·변경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를 한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물류창고업의 등록 또는 제2항에 따른 변경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1.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의 설치·운영

2.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보관·저장업

3.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보존업 중 식품냉동·냉장업, 「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보관업 및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산물가공업 중 냉동·냉장업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자유무역지역법」에 따른 자유무역지역에서도 관세청장의 승인을 받아 보세창고와 같이 물품을 장치(藏置)할 수 있는데(제37조 물품의 반출 등), 이는 「관세법」에 따른 보세창고와 유사하나 보세창고 그 자체는 아니므로 보세창고와는 달리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이 될 수 있으나, '23.8. 유선 민원에 따르면 상당수의 업체가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물류창고업 등록을 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는 설명임.

어 처벌된 사례는 없다는 설명⁹⁾임.

2) 행정형벌의 과태료 전환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최초 물류창고업 등록기간을 놓쳐 미등록 상태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에 대한 제재를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행정형벌에서 1천만원 이하(정동만의원안) 또는 500만원 이하(엄태영의원안)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전환·완화하여 미등록 상태에 있는 업체들의 자진등록을 유도함¹⁰⁾으로써 물류창고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는 긍정적인 것으로 보임.

다만, 물류창고업 등록 시 「물류창고업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¹¹⁾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¹²⁾, 이를 통해

9) 국토교통부의 지자체 대상 현황조사 결과(2024.1.) 제도도입('12) 이후 현재까지 물류창고업 미등록 업체 처벌 사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는 설명임.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경우 2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물류창고업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는데, 현행법에 따라 물류창고업 등록 의무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게 되면 2년 간 물류창고업을 등록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개정안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 과태료를 납부한 이후 물류창고업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10(준용규정) 물류창고업(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창고업은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8조,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제17조제1항제5호는 제외한다) 및 제19조를 준용한다.

1.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법인으로서 그 임원 중에”는 “물류창고업을 등록하려는 자(법인의 경우 그 임원을 포함한다)가”로, “해당하는 자가 있는 경우”는 “해당하는 경우”로,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 “국토교통부령”은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의 공동부령”으로, “물류터미널사업”은 “물류창고업”으로, “제7조제1항”은 “제21조의2제1항”으로, “제7조제3항”은 “제21조의2제2항”으로, “제7조제4항”은 “제21조의2제3항”으로, “물류터미널사업협회”는 “물류창고협회”로 본다.

2.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는 “물류창고업자”로, 제19조제1항 중 “복합물류터미널사업자 및 일반물류터미널을 경영하는 자”는 “물류창고업자”로 본다.

제8조(등록의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복합물류터미널사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8., 2015. 12. 29.>

1.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을 선고받은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 참고.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 「별표1」, 「별표2」

화재 예방·대응을 위한 가연물·발화원 분리, 소방시설관리 등에 대한
증명이 이루어지는바, 물류창고업 미등록에 대한 제재가 완화됨에 따라
물류창고업 미등록 경영이 오히려 증가하여 국민의 생명·안전을 위협
할 수 있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등록이 요구되는 업태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경영하는 경우 형
벌을 가하는 입법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¹³⁾

「물류정책기본법」

제71조(벌칙)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43조제1항에 따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제물류주선업을 경
영한 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한 자

12) 「물류창고업 등록에 관한 규칙」

제3조(물류창고업의 등록) ①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물류창고업의 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
지 제1호서식의 물류창고업 등록·변경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
·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
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
다), 건물등기부 등본, 토지등기부 등본 및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2. 물류창고업의 사업운영계획에 관한 서류(**화재안전 관리계획서를 포함한다**)

13) 단, 미등록 수련시설 운영(「청소년활동 진흥법」), 미등록 문화산업전문회사 명칭 사용 업무
수행(「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의 경우 각 법률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을 수용하는 경우 과태료 수준과 관련하여 양 개정안이 상이한데, 적절한 과태료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종전 규정에 따른 형벌 수준(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위반행위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 효과, 미등록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례¹⁴⁾ 상 과태료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경과조치 미규정에 대한 검토

양 개정안의 부칙을 살펴보면 물류창고업 미등록 경영에 대한 벌칙을 과태료로 전환하고 별도의 경과조치를 두지 않고 있는데,

이처럼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경우 개정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14)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2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수련시설을 운영한 자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5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2조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문화산업전문회사의 명칭을 사용하여 제49조 각 호의 업무를 하거나 투자자를 모집한 자

「발명진흥법」

제6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제23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위반하여 지역지식재산센터의 명칭을 사용한 자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5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16조제3항에 따른 부분가동을 위한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공장을 부분가동하는 자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5.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자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꿀벌 또는 양봉의 산물·부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한 자

경과조치를 두지 않으면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법률이 개정된 경우 신법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형법」 제1조제2항·제3항 및 「형사소송법」 제326조제4호¹⁵⁾에 따라 형벌로도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주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제1항¹⁶⁾에 따라 과태료도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형벌이 과태료로 전환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그 전의 행위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형벌에 처하고, 그 이후의 행위는 신법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으로 벌칙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것이 일반적¹⁷⁾이라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다만, 형벌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는 경우 미등록 업체의 자진등록을 유도하지 못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을 유도함으로써 물류창고업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도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 달성에 미흡한 측면이 있음.

15) 「형법」

제1조(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② 범죄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가벼워진 경우에는 신법(新法)에 따른다.

③ 재판이 확정된 후 법률이 변경되어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형의 집행을 면제한다.

「형사소송법」

제326조(면소의 판결) 다음 경우에는 판결로써 면소의 선고를 하여야 한다.

4. 범죄 후의 법령개폐로 형이 폐지되었을 때

16)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3조(법 적용의 시간적 범위) ① 질서위반행위의 성립과 과태료 처분은 행위 시의 법률에 따른다.

17)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2024), p.895-896

4) 체계·자구 및 시행일에 대한 검토

개정안은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함에 따라 안 제67조제1항을 신설한 것인데, 현행 제67조제3항¹⁸⁾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제1항부터 제3항(종전 제2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제4항(종전 제3항)의 자구를 수정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또한, 개정안은 부칙에서 이 법의 시행일을 공포 후 즉시로 규정하고 있으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제3항¹⁹⁾은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물류창고업 등록의무 위반에 대하여 제재를 과태료로 전환하는 것은 시행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므로 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다. 국토교통부 의견

형벌로 인해 미등록자가 양산될 수 있는 측면이 있으므로 유사한 수준의 행정제재로 전환하여 제도 집행력을 제고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1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19)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7조(과태료)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부과·징수한다.

동의한다는 의견임.

미등록 물류창고업자가 형사처벌이 두려워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등 과도한 형벌이 오히려 제도 집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물류창고업 등록의무는 행정상 의무로 반드시 형벌로 규제하지 않더라도 행정제재를 통해 입법목적 달성이 가능한 것으로 보임.

다만, 기존 형벌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었던 점을 고려하여 이와 동일한 수준의 과태료(1천만원 이하)를 부과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6788-5580

[별표 1]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4조 관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인 전체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시설 또는 전체면적의 합계가 4천500제곱미터 이상인 보관장소의 물류창고는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서 화재안전 관리계획을 작성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 1) 물류창고에 존재하는 발화원(發火源)에 대한 제거와 감소를 위한 조치를 실시하고, 발화원(發火源)과 가연물(可燃物)은 서로 간의 충분한 공간 확보나 차단막 설치 등을 통한 화재예방 조치(「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위험물은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
- 2) 위험물안전관리 규정상 허가받지 않은 위험물의 보관 금지 등 보관물품 관리 조치
- 3) 가연물 폐기물 등이 쌓이지 않고 적절히 보관되다가 일과 마무리 시간에 폐기될 수 있도록 하는 가연성 폐기물 관리 조치
- 4) 누전·합선·용량초과·과열·접촉불량 등 전기적 요인에 의한 화재 예방을 위한 전기시설에 관한 수시점검 조치
- 5) 지게차 등 보관물품의 이송장비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수행 및 이송장비에 사용되는 충전설비·송전선 등에 대한 화재예방 조치
- 6) 화기취급 작업자는 화기를 취급하기 전에 작업 시간, 장소, 작업 종류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정보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에게 신고하는 조치
- 7) 냉장·냉동 창고의 경우 냉장·냉동 시스템의 부품이 과열되지 않도록 예방

조치하고 시스템의 운전·점검 시 화재 예방을 위한 관리 조치

- 8) 물품 보관을 위해 설치된 적층식 랙(메자닌)에서 용접·용단 등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작업을 금지하는 조치 다만, 작업반경 11미터 이내의 가연성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는 등 화재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 화재대응 부분

- 1) 물류창고 내 경보설비의 화재발생 알림, 근무자의 화재목격 통지 등 화재발생 사실을 인지하면 즉각적으로 소방서에 통보하는 통보계획 및 조치
- 2) 소방시설인 소화기, 발신기, 유도등 등의 위치가 랙(받침대)·선반 등으로 가려지지 않고 물류창고 내 임의 위치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소방시설 위치표시 조치
- 3)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문이 평상시 닫힌 상태로 유지되는 지 등을 확인하는 관리 조치
- 4) 방화구획을 구성하는 방화셔터와 방화스크린셔터가 폐쇄신호에 의해 완전히 닫히는지 등을 확인하는 관리 조치
- 5) 피난용 출입문,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 등의 하단에 물건이 쌓여 있지 않도록 하는 물건 적치(쌓아 둠) 방지 조치

다. 화재대비 부분

- 1) 근무자에 대한 연1회 이상 피난계단·피난통로·비상구 등의 위치, 각 구역에서 비상구 및 출입구까지의 피난 동선, 소방시설 및 자동심장충격기 등 응급장비의 위치 및 사용방법 등 피난 안내교육 실시(단기 근무자는 근무시작 전 피난 안내 실시)
- 2) 근무자의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작업장의 위험성과 안전작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의 교육 조치
- 3) 방문자의 안전한 피난을 위한 비상시 조치계획 작성 및 안내교육 실시
- 4) 화재위험을 제거하거나 감소하기 위해 수행한 작업의 기록 조치

라. 기반자료 부분

- 1) 화재발생 시 소방활동의 지원 등을 위하여 물류창고의 구역별 보관 물품의 종류 및 평면도·소방설비도 등 건축물에 대한 상세 정보를 경비실, 방재실 (다른 부분과 방화구획) 등 사람이 상시적으로 근무하는 장소에 갖춰 놓거나 전산으로 관리하며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 등 재난대응 기관에 제공하는 조치
- 2) 물품 보관의 적재(쌓아 둠) 형태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 3) 랙, 선반 등 보관시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 ① 랙 및 선반의 단수(세로 칸의 수)와 열수(가로 칸의 수)
 - ② 랙 및 선반의 높이, 폭, 종방향(깊이방향) 길이
 - ③ 랙 및 선반 통로의 폭 (각 랙·선반 사이의 간격)
 - ④ 랙·선반의 최상부와 천장간의 거리
- 4) 적층식 랙(메자닌) 설치 여부, 사용 용도 및 구체적인 규격 등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 5) 물품을 보관하기 위한 팔릿(pallet), 보관박스 등과 물품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재 등의 재질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 6) 지하층의 면적 및 지하층의 사용 용도에 대한 정보를 작성·보관하며 필요시 제출하는 조치

[별표 2]

물류창고업의 화재안전 관리계획서 작성 지침(제4조 관련)

1.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에 따른 물류창고업 등록 대상 이면서 물류창고의 연면적이 1만5천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화재안전 관리계획서에 추가적으로 기재하고 이행한다.

가. 화재예방 부분

- 1) 화재예방 및 화재 원인 조사 등 시설물 안전을 위해 물류창고 내·외부에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설치

나. 화재대응 부분

- 1) 공간이 넓은 물류창고의 특성과 랙·선반 등의 대형 구조물로 인해 피난동선의 신속한 파악이 곤란한 경우 물류창고 내부의 작업장과 물품적치 공간 등에 피난동선이 표시된 피난안내도 및 피난유도선 등의 적절한 설치 조치
- 2) 소화기, 소화전 등 소방시설 위치가 표시된 소방시설 현황안내도 등의 적절한 설치 조치

다. 화재대비 부분

- 1) 근무자의 출·퇴근 관리 시스템·체계를 도입하는 등 비상시 근무자의 출·퇴근 현황을 신속히 사고대응 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조치
- 2) 물류창고 건물의 관리책임이 일원화되지 않거나 임대업체가 다수 있는 경우에는 화재안전 조치에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게 되며 이를 위한 화재예방·대응·대비 분야의 협조체계 구축 및 연1회 이상 합동 교육·훈련 실시